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639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거제지사 피고 C)로부터 2020. 9. 16.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을 1,657,000,000원으로, 2020. 9. 21.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수장, 잡철, 흙통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을 2,01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22.경부터 11. 23.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대여 한 사실, ② 피고 C는 2020. 9.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C가 2021. 6. 15.경까지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사실, ③ 피고 D은 피고 C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2021. 6. 15.경 ‘차용증 일금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2021. 6. 30.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6월 15.일 D. H 귀하’라고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은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보증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D은 2023. 8. 29.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제3자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제3자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원고 대표이사 H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D이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제3자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한 이상,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의사의 합치에 따른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별지

[청 구 원 인]

1. 2020년 9월 16일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공, 수장, 잡철, 흙통공사를 일 십육억 오천칠백만 원에 계약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창호공사 이십억 일천 오백만 원 함께 삼 십육억 칠천이백만 원(3,672,000,000)에 계약하고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습니다.
G 아파트 기성금 청구시 변제하기로 하고 주 채무자인 피고1 C에게 48,000,000원을 차용해주었고, 2020년 9월 18일에 영수증을 받고 피고1 C에게 몇 차례 나누어 48,000,000원 입금주었습니다. 큰 금액이라 보증인으로 피고2 D이 차용증을 써주 었고, 2021년 6월 30일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2021년 6월 15일에 약속하였습니다.
2. 2년 3개월이 지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피고 D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아직까지 금 오천만 원(W50,000,000)이 현재까지 입금이 되고 있 지 않았고, 공사도 시작도 하지 않고 거짓계약서 작성하고 돈을 권취하여 주지 않는 등 행실 이 좋지 않습니다.
3. 원고는 위의 내용과 같이 50,000,00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 니다.

끝.

